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4601	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		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순번	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1	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	2210134	우재준의원	2025.4.25.	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5. 9.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
2		2211834	권향엽의원	2025.7.30.	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5. 9.25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5. 11. 20.)에
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
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
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
11. 21.)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
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, 중
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 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·도에 설립되어 매년 5,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또한,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,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(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)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(안 제52조제1항)
- 나.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2조제3항)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에”를 “제4항에”로 한다.

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
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
3. 기술창업 활성화, 중소기업·벤처기업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)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하 “창조경제혁신센터”라 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· ② (생 략)	제42조(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
③ (생 략)	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
④ 제3항에 따른 출연 ·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⑤ 제4항에</u> ----- ----- -----.
제52조(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 기관(이하 “지역창업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	제52조(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. 공공기관</u>
<u><신 설></u>	<u>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</u>

<u><신 설></u>	<u>3. 기술창업 활성화, 중소기업</u> <u>· 벤처기업(「벤처기업육성에</u> <u>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</u> <u>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)의</u> <u>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</u> <u>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</u> <u>하 “창조경제혁신센터”라 한</u> <u>다)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